

case
6

합금 알루미늄 빌렛

요약

사례명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2638 (2024.05.13.)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스크랩 등 다국적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하고 합금 첨가제를 혼합하여 합금화를 수행한 후 주조, 균질화 등 여러 제조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인 합금 알루미늄 빌렛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은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p> <table border="1"> <tr> <td>명칭 변화</td> <td>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td> </tr> <tr> <td>성질 변화</td> <td>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td> </tr> <tr> <td>용도 변화</td> <td>-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td> </tr> </table>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I 판정사례⁶⁾

사 례 명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2638 (2024.05.13)

사실관계

요청자	HMA, Inc. (대리인: Barnes, Richardson & Colburn LLP)	
제품명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구성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알루미늄 스크랩 • 합금 첨가제(실리콘,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제품 용도	• 상업용 건축·건설, 트럭·트레일러·군용 차량 제조 등에 사용	
원재료 HTSUS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제7601.10호) • 알루미늄 스크랩 (제7602.00호) • 실리콘 (제2804호), 구리 (제7404호), 철 (제7205호), 마그네슘 (제8104호), 망간 (제8111호), 티타늄 (제8108호), 크롬 (제8112호)	
완제품 HTSUS	• 7601.2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멕시코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
 2. 예열오븐(pre-heat oven)과 전자 포트(electronic pot)를 사용한 교반
 3. 탈가스 포트(degassing pot)를 사용한 불순물 및 수소 가스 제거
 4. 주조기에서 빌렛 성형
 5. 연속식 및 배치형 균질로(homogenizing furnace) 구역에서 응력 제거 열처리
 6. 빌렛 절단기로 절단 및 표면 연삭
 7. 초음파 결함 검사 및 분광 분석

6)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8. 최종 균질성 검사 후 포장

9. 미국 수출

시나리오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스크랩	합금 첨가제
1	- 멕시코산, 캐나다산 혹은 양국 혼합	X	
2	- 중국산 60% - 한국산 20% - 호주산 20%	X	- 한국산 실리콘, 구리 - 중국산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3	- 한국 또는 호주산 60% - 캐나다산 10%	멕시코산 30%	

쟁점사항

- ✓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또는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렛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정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71341 (1983.08.24.)*

사례 수입된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를 변형시켜 생성된 용융 알루미늄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함

판정 최종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은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며, 관련 업계에서도 원재료와 최종 제품을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금 첨가물의 추가에 의해 용융 알루미늄이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 사례**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를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과 함께 한국에서 용융 및 혼합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
- 판정**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있는 공정으로 판단

판정 결과

☑ 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결론

- ✓ 실질적 변형의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에서 알루미늄 빌렛의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232조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렛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으로 보고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2638 (2024.05.13.), <https://rulings.cbp.gov/ruling/H332638>
-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https://rulings.cbp.gov/ruling/N30143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